

## 2022년 iH(인천도시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본 모집공고는 **임대 가능한 주택(공급예정 물량 포함)의 2배수**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주택매입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세대의 소득 및 임대조건 등을 고려하여 신혼부부Ⅰ 또는 Ⅱ 주택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입주대상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만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 (만6세 이하 자녀)	
소득기준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임대조건	시중 시세 50%	시중 시세 70%
임대기간	최장 20년	최장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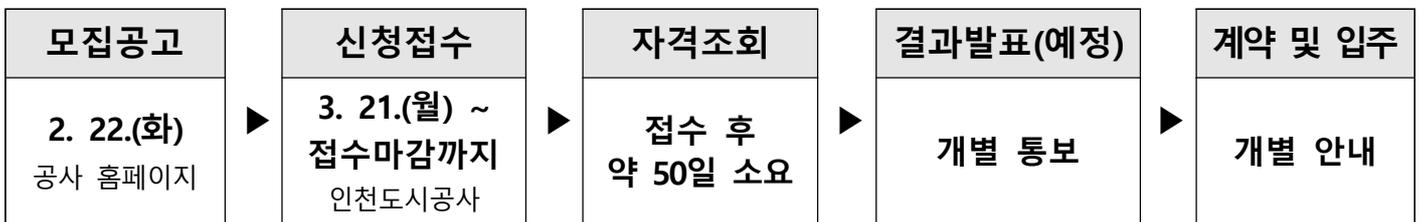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가 불가할 수 있으니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청과정에서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2022. 2. 22.(화)**

※ 신청기간 내 신청이 저조하여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상시접수로 전환하여 모집 실시

### I 공급개요

◇ **공급일정**



◇ **공급지역 : 인천시 관내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등)**

※ 지역별 공급물량 차이로 대기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희망)지역이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세대 : 700호 (신혼Ⅰ 100호, 신혼Ⅱ 600호)**

◇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인 주택**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신혼Ⅰ - 2년 (9회 재계약, <u>최장 20년</u> 거주) 신혼Ⅱ - 2년 (2회 재계약, <u>최장 6년</u> 거주, 자녀 있는 경우 <u>최장 10년</u> )
임대조건	시중 시세 30%(신혼Ⅰ), 50%(신혼Ⅱ) 수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입주안내 시 개별 통보 예정

- 재계약 시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 관련,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Ⅱ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1. 신청자격 및 순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2. 22.)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으로서 ①신혼부부, ②예비신혼부부, ③한부모가족 또는 ④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유 형	순 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신혼Ⅰ	1·2·3 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b>70%이하</b>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b>90% 이하</b> )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신혼Ⅱ	1·2·3 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b>100%이하</b>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b>120% 이하</b> )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4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b>120%이하</b>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b>140% 이하</b> )	· 총자산 30,700만원 이하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대 상	자 격
①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혼인 신고일 기준)
②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비 고
70%	2,692,468	3,650,028	4,368,364	4,965,944	4,965,944	5,175,553	신혼 I
90%	3,290,794	4,562,535	5,616,468	6,384,785	6,384,785	6,654,282	
100%	3,589,957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7,393,647	신혼 II
120%	4,188,283	5,931,296	7,488,624	8,513,046	8,513,046	8,872,376	
140%	4,786,610	6,843,803	8,736,728	9,931,887	9,931,887	10,351,106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4호]

세대구성원	비 고
①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② 신청자 직계존·비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③ 배우자 직계존·비속	

※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이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②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③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순위별 세부 자격요건

대 상	세부 자격요건
1순 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임신 중, 출산·입양 모두 해당, 자녀는 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
2순 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 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혼인가구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4순 위	혼인가구(신혼II에만 해당)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임신여부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로 확인</li> <li>• 출산시기는 출생신고일을 기준하되 입양(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은 입양신고일 기준</li> <li>※ 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li> </ul>

## 2. 선정기준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자격조회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동일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제12조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아래 기준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3)

###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1. 수급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 3점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2점

---

2. 자녀의 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3.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 가. 24회 이상 : 3점
  -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4. 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연속 거주한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 가. 5년 이상 : 3점
  -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 다. 3년 미만 : 1점

---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2점

---

6.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부양하는 사람 : 1점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 Ⅲ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1. 신청방법

구 분	신청방법
등기우편	· 주소 :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사업1부
전자우편	· 전자우편 주소 : rent@ih.co.kr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해야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문접수	· 접수시간 : 10:00~17:00 (주말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인천도시공사 별관 1층 고객센터 (인천지하철 2호선 남동구청역 3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 2. 신청기간 : 2022. 3. 21.(월) ~ 접수 마감 시 까지

- ※ 모집인원 미달 시 상시접수로 전환하여 진행(2022. 12. 31.까지)
- ※ 방문접수 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7:00까지입니다.
-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의 [신분증 및 도장] 부분 참조)
- ※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제출서류

### ○ 기본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2. 2. 2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구비서류	참고사항
공급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장소(주거복지처)에 비치, 모집공고 시 홈페이지에 첨부</li> <li>※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반드시 기재</li> </ul>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ul>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li> </ul>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신고일 확인(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제출)</li> <li>※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제출 불필요</li> </ul>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서 내용 확인 후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li> <li>※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li> </ul>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서 내용 확인 후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li> <li>※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li> </ul>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료로 확인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등 내역 기재</li> <li>• 신청자 서명 후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li> </ul>
신분증 및 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도장 또는 서명가능</li> <li>•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li> <li>• (그 외의 자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li> </ul>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해당 시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등록일 반드시 기재) ※ 배우자가 지적·정신장애인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 추가 제출서류 (해당 시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 입양 시(입양신고일 확인용)
임신진단서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작성 후 서명, 모집공고 시 홈페이지에 첨부
세대구성 확인서 (세대분리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신청자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 자녀의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 제출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해당 시 제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4. 예비입주자 발표

-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안내**가 진행됩니다.
- 신규 주택매입 및 기존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주택배정 및 안내가 진행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주택을 선택하여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은 **발표일로부터 12개월**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집공고 일정과 관계없이 차후 계약 안내된 시점에 산정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합니다.</li> <li>·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li> </ul>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 <b>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인천 도시공사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li> <li>· ※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li> </ul>
입주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은 예비입주대상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b></li> <li>· <b>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 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b></li> <li>· 신청인의 입주자격은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li> <li>· 매입임대주택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li> </ul>
동호배정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 되는 대로 기 선정된 <b>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b>됩니다.</li> <li>· 입주관련 안내는 공가 발생 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택을 배정한 후에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며, 안내된 일정에 맞춰 계약체결하시면 됩니다.</li> <li>· <b>원하시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는 것은 불가</b>하며, 예비입주자의 신청지역과 세대원 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배정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ul>
입주관련 (기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b>미상환시 입주불가</b>)</li> <li>·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 해야 됩니다.</li> <li>·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 및 소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해야 합니다.</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b>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 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li> <li>· 입주 시, 지원주택에 <b>전입신고</b>를 하셔야 하는 등 <b>대항력 유지 의무</b>가 있습니다.</li> <li>·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li> </ul>

○ 문의전화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 주거복지사업1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방법

신청인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신청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제외)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2022. 02.

인천도시공사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		해당 시·군·구 전입일	년	월	일	

신청대상	<input type="checkbox"/> 신혼부부 <input type="checkbox"/> 예비신혼부부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	--	--	--	--	--	--

자격요건	<input type="checkbox"/> 1순위 (임신 중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input type="checkbox"/> 3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	--	--	--	--	--	--

입주희망지역	1지망 (     )구	2지망 (     )구	3지망 (     )구	4지망 (     )구
--------	--------------	--------------	--------------	--------------

주택 및 자산현황	<input type="checkbox"/> 무주택여부	<input type="checkbox"/> 자산 및 자동차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총자산가액 28,800만원, 자동차가액 2,468만원)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자산 및 자동차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에 신청하고 기재 내용이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

아래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 가	평 점
①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 다. 차상위계층	3점 3점 2점	(     )	(     )점
② 자녀의 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인	(     )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     )회	(     )점
④ 사업대상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     )개월	(     )점
⑤ 장애인 등록여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신청인포함) 된 자	2점	( 0, X )	(     )점
⑥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점	( 0, X )	(     )점
			<b>총 점</b>	(     )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인천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인천도시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보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type="checkbox"/>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인천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안내문 등의 e그린 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천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같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여부	물건 소재지	금액	계약자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출자금/ 출자비분	예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예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_\_\_\_\_ (인)

20    년    월    일

### 인천도시공사 사장, 구청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해당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금회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일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	
예비배우자		-	

20    년    월    일

신청인 1(대표신청인) : (인)

신청인 2(예비배우자)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붙임] 소득, 자산 산정방법

소득,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임 (소득 및 자산액은 가구원의 합계액을 말함)

구 분	산 정 방 법
소 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li> <li>•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li> </ul> <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p>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li> <li>*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li> <li>•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li>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 </ul> </li> </ul>
총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li>•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li> <li>•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li> <li>•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li> <li>•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li> </ul>

구 분		산 정 방 법
총자산	일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li> <li>공공기관 대출금</li> <li>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 목	소득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보수월액</li> <li>-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li> <li>-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li> <li>-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li> </ul>
	일용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li> <li>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li> <li>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li> <li>-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li> </ul>
	자활 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 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li> <li>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근로자 근로내역</li> <li>-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li> </ul>
사업소득	농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li> <li>*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li> <li>-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li> <li>-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li> </ul>
	임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li> </ul>
	어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li> </ul>
	기타 사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li> <li>- 사업자등록증</li> </ul>
재산소득	임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li> </ul>
	이자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li> </ul>
	연금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li> <li>- 금융정보 조회결과</li> </ul>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li> </ul>

총 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li> <li>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li> <li>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li> <li>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li> </ul>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li> </ul>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li> <li>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li> </ul>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부 확정일자 정보</li> <li>직권조사 등록</li> </ul>
		선박·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li> <li>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li> </ul>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li> </ul>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승마, 요트회원권</li> </ul>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li> </ul>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li> </ul>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li> </ul>	- 국토부 주택전산망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li> <li>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ul>	- 금융정보 조회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li> <li>임대보증금</li> </ul>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li> </ul>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9.5.9.)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자산검색 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가구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